

외국인 유학생 국제품 인증 제도 시행(안)

I. 현황

1. “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방안”(외국인유학생지원팀)에 따라 2014학년도 이후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3품인증 중 인성품, 창의품 인증 취득은 면제하나 국제품 인증취득 의무는 부과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
2. 3품인증제도 주관 부서인 교무팀에 관련지침인 3품인증제 지침 개정 요청 완료

II. 시행(안)

1. 대상자 : 2014학년도 이후 학사과정 순수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
2. 국제품 인증 취득 요건
 - 2014~2015학년도 입학자 : TOPIK4급 이상
 -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: TOPIK5급 이상
3. 인증취득 증빙 제출처 : 국제처 외국인유학생지원팀
4. 제출기한
 - 전기(2월) 졸업예정자 : 졸업예정 학년도 12.30까지
 - 후기(8월) 졸업예정자 : 졸업예정 학년도 6.30까지
5. 전산시스템 개발 : 외국인 유학생 정보 관리시스템에 인증 취득 여부 및 한국어능력 수준 입력하여 관련 시스템(학적, 졸업사정 등)에 연동
6. 업무담당
 - 국제처 : 업무 총괄, 한국어능력 증빙 접수 및 전산입력, 전산 시스템 개발, 관련 프로그램(TOPIK특별반 개설, TOP IK 단체 응시 등) 학생 홍보 총괄
 - 교무처 : 3품인증제지침 개정

- 단과대학 : 학생 홍보 지원, 관련제도 학생 안내
7. 세부사항 지침반영 : 외국인 유학생 관리·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 예정

【신·구 조문 대비표】

현 행	개 정 (안)
<p><조 신설></p>	<p>제12조(외국인 유학생 국제품 인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4학년도 이후 학사과정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요건으로 국제품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. ○ 국제품 인증 취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4~2015학년도 입학자 : TOPIK4급 -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: TOPIK5급 ○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소정기한 내에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(2월) 졸업예정자 : 매년 12.30 - 후기(8월) 졸업예정자 : 매년 6.30 ○ 국제품 인증취득 증빙은 취득 기준 이상의 TOPIK 성적표로 하며, 증빙의 유효기간, 취득시기(입학 전, 입학 후)는 구분하지 아니한다. ○ 입학원서 제출 시 조건을 충족하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기 제출한 증빙으로 갈음한다.